# 공급 계약서

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-1번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(주)원익 아이피에스(이하 'IPS'라 칭함) 와 충청남도 천안시 동안구 목천읍 응원 1길 69-79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우리 마이크론(이하 '공급자'라 칭함)은 2015년 [11]월 [ 18]일 ("계약발효일")부로 Glove Box(이하 "본 제품")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, 상호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.

본 계약은 2014년10월1일자 공급계약서에 우선하여 해석 및 적용토록 한다.

## 제1조 【목 적】

본 계약은 "공급자"가 개발, 제조한 본 제품을 "IPS"가 국내 또는 해외에 위치한 제3자("End-user"라 칭함)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, 양 당사자들은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① "IPS"의 역할

"IPS"는 본 제품을 "End-user"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"공급자"와 긴밀히 협력하며, "End-User"로부터 제공 받은 사양(Specification)을 "공급자"에게 전달한다. 또한 "IPS"는 "End-User"에 대하여 본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이행한다.

## ② "공급자"의 역할

"공급자"는 "IPS"를 통해 전달 받은 "End-User"의 사양에 따라 본 제품을 제조, 공급하기 위하여 "IPS"와 긴밀히 협력하며, "End-user"의 요청에 따른 본 제품의 포장, 운송 및 하자보수 등 일체의 행위를 이행한다. 단, "End-User"가 해외인 경우에는 포장, 운송,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각 발주서별 개별계약에서 정하도록 한다.

## 제2조 【사양】

본 제품의 사양은 "End-User"와 양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최종 사양을 말하며, 구체적인 사양의 내용은 각 "End-User"와 체결하는 구매계약서의 별첨으로 한다. 만약 본 제품의 사양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"End-user"와 상호 협의 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3조 【발 주】

① 본 제품에 대한 발주는 "IPS"가 "End-user"로부터 본 제품의 PO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, "IPS"는





"공급자"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발주서 또는 개별 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② "IPS"는 제품 발주서 또는 개별 계약서 발행 시 "공급자" 자신이 발행하여 "IPS"에게 제공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납기, 운송, 설치, 대금지급조건 등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【납 기】

- ① "공급자"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"IPS"로부터 제조 의뢰 받은 본 제품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"IPS" 가 지정한 기일 및 장소에 공급한다. 단, 전술한 기일 및 장소는 "End-User"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그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.
- ② 만약 "공급자"가 본 제품을 "IPS"의 지정기일 또는 지정장소에 납품할 수 없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"공급자"는 즉시 그 사실을 "IPS"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"IPS"의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"IPS" 및 "End-User"가 입은 손해(지체상금을 포함한다)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5조 【대금 지급】

- ① "IPS"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발주서 등 개별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자신의 대금 지급 기준의 조건("공급자"본 제품 출하 시 100% 세금 계산서 발행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)으로 "공급자"에게 지불하여 야 한다. 단, 본 계약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"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"및 "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"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"공급자"는 "IPS"가 자신을 위하여 본 제품을 "End-User"에게 판매하는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로써 "IPS" 가 "End-User"에게 본 제품을 판매하는 금액의 최소 10%를 마진으로 수익할 수 있는 것에 합의한다. 다만, 당해 마진율로 인하여 "공급자"가 본 제품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를 입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당해 마진율을 추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6조 【보 증】

- ① "공급자"는 "IPS" 또는 "End-User"에게 공급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제2조에 정한 사양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.
- ② "IPS"는 "공급자"로부터 납품된 본 제품에 대해서 제2조의 사양에 기초하여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 불합격이 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"공급자"에게 즉시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, 이로 인해 입은 "IPS"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. 단, "IPS"의 요청에 의해 본 제품이 "End-User"의 사업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된 경우 "IPS"는 "End-User"에게 본 제품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고, 당해 검수는 "End-User"의 자체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다.
- ③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"End-User"의 검수 결과, 본 제품이 하자 또는 사양 미준수 등 "공급자"의 책임

있는 사유로 불합격되는 경우 "공급자"는 "End-User"와의 구매계약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"End-User"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단, "공급자"는 본 제품의 검수 불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"End-User"의 어떠한 Claim, 손해배상청구, 분쟁 등으로부터 "IPS"를 면책시켜야 한다.

④ "End-User"가 본 제품의 검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"공급자"는 "End-User"에게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, 부품의 교체 기타 "End-User"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. 단, 하자가 "공급자"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
## 제7조 【소유권 및 위험부담】

본 제품의 소유권은 "공급자"가 본 제품을 "IPS" 또는 "End-user"에게 납품하여 "IPS"가 본 계약 제5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때에 "공급자"에게서 "IPS"로 이전하며,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은 "공급자"에게 귀속한다.

#### 제8조 【상 표】

"공급자"는 "IPS" 또는 "End-User"에게 본 제품을 납품 시 "IPS" 고유의 상표 또는 로고(Logo)를 부착하여야 한다.





#### 제9조 【제3자의 권리침해】

"공급자"는 본 제품이 제3자의 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, 제3자로부터 소송, 분쟁 Claim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"공급자"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"IPS" 및 "End-User"를 면책시켜야 한다. 또한 만약 전술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"IPS" 또는 "End-User"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당해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10조 【비밀유지】

양 당사자는 "End-User"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 사실 및 본 제품의 거래를 통하여 얻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, 업무상의 영업 비밀(유·무형에 관계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)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제3자에게 비밀이 누설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. 단, 공지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에 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. 본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준용한다.

## 제11조 【계약의 해지, 해제】

- ① "IPS"와 "공급자"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, 동 최고기간 내에 상대방이 위반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, "IPS"는 "공급자"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"공급자"가 "IPS"에게 중대한 손해나 위해를 끼친 경우
  - 2. "공급자"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,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
  - 3. "공급자"가 가압류, 가처분, 압류, 경매, 기타 강제집행을 당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4. "공급자"가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
  - 5.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"공급자"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"IPS"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
  - 6. "End-User"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. 단 이러한 경우 발주 이후 당해 발주분에 대한 개별 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소요된 "공급자"의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"IPS"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"IPS" 또는 "공급자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,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"IPS"가 "공급자"로부터 제공 받은 본 제품 등과 관련하여 "공급자"의 귀책사유로 "End-User"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"공급자"는 당해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【유효기간】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. 단,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13조 【일반 조항】

- ⑤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"IPS"와 "공급자"가 선의로써 협의 후 해결한다.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,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"IPS"의 관할 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로 한다.
- ⑥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. 서 면 동의를 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은 양수인과 본 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.

#### 제14조 【특약 조항】

"공급자"는 본 제품을 "End-User"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양의 확정, 운송, Set-up, installation, 검수진행 및 하자보수 등은 "IPS"와 "End-User"가 체결하는 구매계약서의 기본적 사항으로 포함됨을 인지하고 있으며, 이러한 사항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"IPS" 및 "End-User"와 협의하여야 한다. 또한 이렇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"IPS"가 "End-User"와의 구매계약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, "공급자"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, "End-User"에 대응하여야 한다. 단, 본 제품을 "End-User"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의 포장,운송 및 운송방법 등에 대한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"IPS"와 "공급자"는 개별 사안별로 협의하는 것을 상기 특약조항보다 우선으로 하되, "IPS"는 사안별 발주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.

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"IPS","공급자"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소유한다.

2015 년 11 월 18 일

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

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-1번지

대표자 성명: 변정 우

주식회사 공급자

충남 천안시 동안구 목천읍 응원 1길

대표자 성명: 박 진